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15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9. 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9. 9. 9.
다. 상정일자 : 제6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99. 9. 1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채진욱 청소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1999.2.8. 법률제5865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1999.8.9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의무 내용이 포함된 종전의 제16조 규정이 폐지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 규정을 폐지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등의 설치·유지·관리관련 수거개선·대체 등의 조치명령 폐지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중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10조제1항 중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 중 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14조제1항 중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제8조제2항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14조제1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2 부과항목별 과태료기준, 부과항목란 중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법 제16조 규정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폐지되어 우리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원일 : 1999. 0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1999. 2. 8 법률제5865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1999. 8. 9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의무 내용이 포함된 종전의 제16조 규정이 폐지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 규정을 폐지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개정주요골자

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등의 설치·유지·관리관련 수거개선·대체등의 조치명령 폐지

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 삭제

3. 개정근거

근거법령 : 1999. 2. 8 법률제5865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종전 제16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슴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제1항중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제8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관련, 과태료부과기준, 2. 부과항목별 과태료기준, 부과항목란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